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for
superintendence system of infocommunication
construction work

2008. 11. 30.

주관연구기관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for
superintendence system of infocommunication
construction work

2008. 11. 30.

주관연구기관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의 연구개발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1월 30일

주관연구기관 :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홍 완 표

참여 연구원 : 유 승 덕
이 승 준
채 윤 영
김 용 호

목 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연구범위 및 목표	7
1. 제도적인 측면	7
2.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	8
제3장 감리법제도 현황 및 분석	11
1. 개 요	11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현황	11
3. 정보통신공사법 관련 현황	15
4. 유사법 현황	17
5.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입법예고안분석	25
제4장 엔지니어링 주체 활동 현황 분석	29
1. 엔지니어링주체 활동현황	29
2. 정보통신감리업체 현황	35
제5장 감리제도 개선방안	44
1. 개 요	44
2. 새로운 법체계 도입방안	45
3. 기존 법체계 개선 방안	51
4. 각 도입방안별 장단점 분석	56
제6장 연구결과	57
부 록	58
참고문헌	97

제1장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말을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정보화 사회의 물결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기반은 전기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융합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네트워크는 널리 산재되어 있는 사람, 물건, 정보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각각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은 물론 연계되어 있는 전체에 생명력을 갖게 하므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른 속도로 향상 및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기술은 네트워크의 신경영역을 더욱 인간과 사물과 정보에 근접시키면서 보다 광역으로 이들을 연결하여 묶어 가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 시대의 시점에서 네트워크의 접속점이 사람이나 사물 및 정보에 가장 근접하게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접속점은 기존의 사람간의 정보전달 매개역할을 넘어서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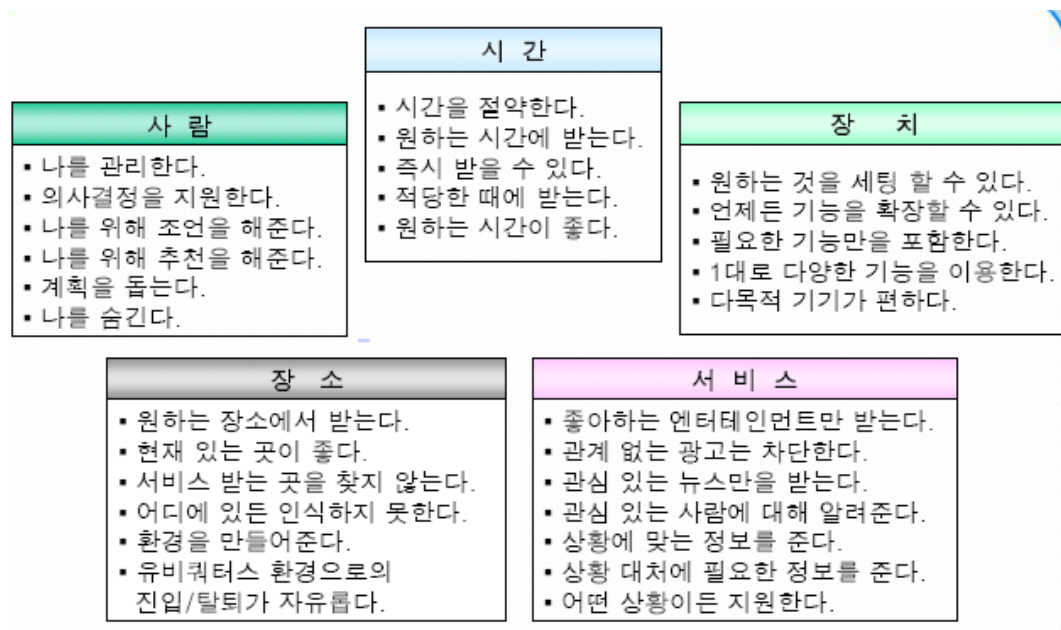


그림 1.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기능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 기술은 이미 “엔지니어링활동”에 상당한 수준 적용 및 응용되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정의를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관련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활동 “이라고 할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과 설계에서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의 어느 한 분야도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관련한 과학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공중통신서비스외의 공공분야에 대한 IT가 접목되는 엔지니어링분야로서는 다음과 같다.

- 가로등 등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상수도시설에 대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등 환경시설에 대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하천 등의 치수에 대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교통정보 및 대기오염상태 등 환경 및 기상정보 등 정보제공 네트워크,
- 소방방재를 위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치안 및 도로관리를 위한 감시 네트워크,
- 가스공급시설물에 대한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공동구 등 도시 시설물 감시 및 제어 네트워크,
- 기타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 네트워크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관련한 과학기술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적용과 응용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간에 상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활용 및 적용되고 있어 경제성, 체계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로서 최근에 관산학연의 많은 관심과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유시티(U-City)건설 사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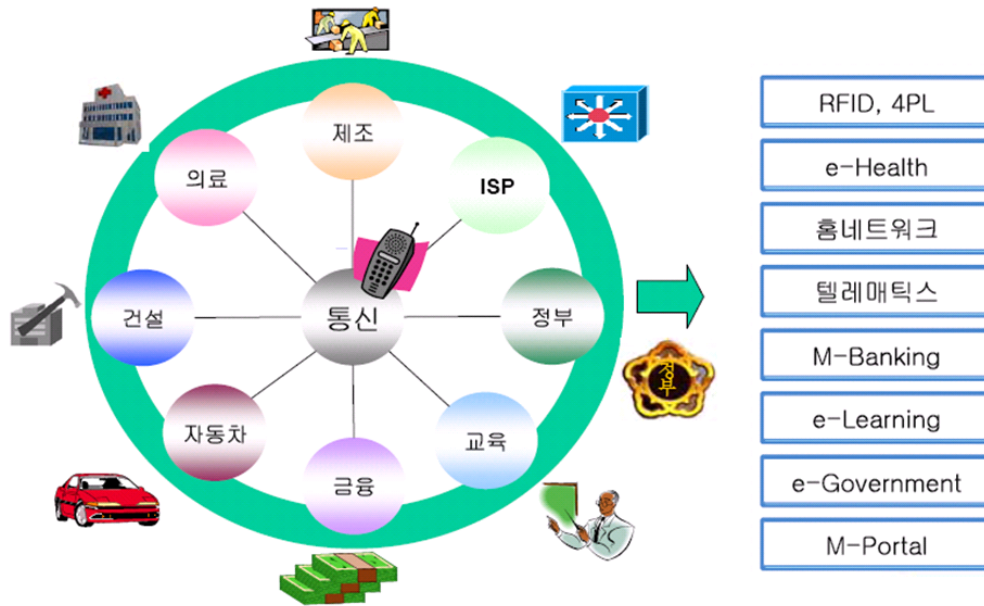


그림 2. 정보통신네트워크에 의한 산업간 융합화 현상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통신산업과 통신외산업이 융합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종 산업간 융합 (HIC: Heterogeneous Industry Convergence)은 통신 산업과 통신 외 산업 간의 협업 (Collaboration) 또는 경쟁 (Competi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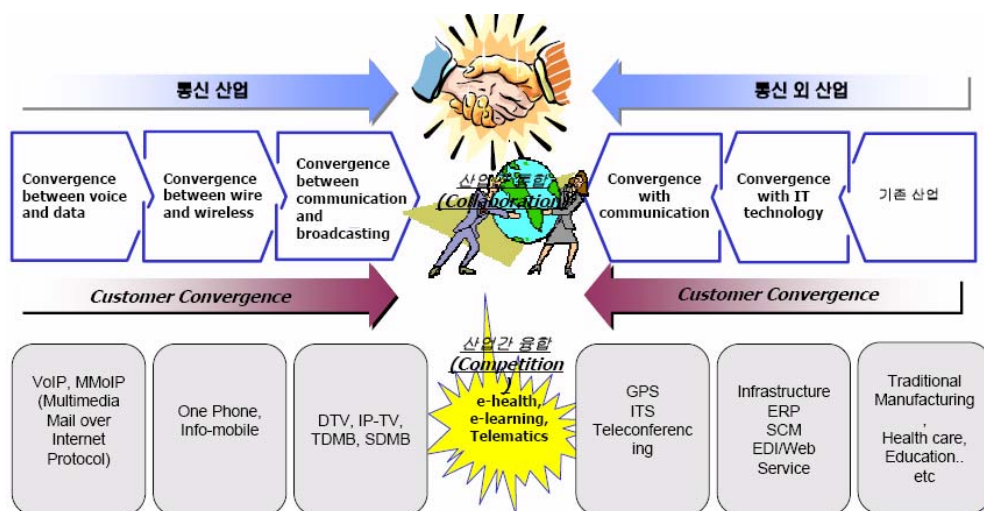


그림 3. 정보통신산업내 융합화와 정보통신산업외산업간 융합화

정보통신산업내와 정보통신산업외의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IT를 접목시키기 위하여는 I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기반을 활용하게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각각 개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인프라기술들이 혼합되어 사용된다. 혼합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게 된다. 네트워크에는 운영기관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자가통신 네트워크와 KT등 통신사업자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공중 네트워크가 있다. 소프트웨어도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네트워크에 탑재되어 운영된다.

IT기술은 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와 활동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혼재되어 사용되게 된다. IT기술은 현재 엔지니어링의 67개 전문분야와 14개 활동범위(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저, 평가, 자문, 검사, 유지 및 보수 활동) 전 분야에서 일부 또는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분야 등 엔지니어링에 소요되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BcN

- . 50~100Mbps급 서비스(유선), 최대 1Mbps급 휴대인터넷(무선)의 도입을 통해 u-City내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가능
- . 음성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고속 전송, 홈 오토메이션 및 홈 네트워킹,

- FTTH

- . 원격검침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u-City내 각종 정보 전송, u-주택, u-Work 등에 활용될 전망

- WiBro

- . 가입자 확대, 서비스 커버리지의 점진적 확장 및 휴대용 단말기와의 결합으로, u-교육, u-행정, u-문화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

- RFID/USN

- . 태그가격 인하 등 RFID 도입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휴대기기·가전기기·센서 노드의 결합으로 u-물류, u-시설, u-환경 등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

- IPv6

- . IPv6의 상용화로 모든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u-서비스 확산에 기여전망

- 암호/보안/정보보호

- . 고성능 네트워크 보안기술, Social Engineering 공격 대응 기술, 바이오 보안정보보호 기술 등을 활용하여 u-서비스 적용시 우려되는 정보화역기능 사전예방 가능 전망
- 홈네트워크
 - . 홈네트워크 보급 가구의 확대로 홈시큐리티 및 원격제어 등 u-홈과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u-헬스케어 등에 이용될 전망
- DMB/텔레메틱스
 - . DMB 양방향 서비스 개시, 텔레메틱스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u-교통, u-문화 등의 서비스 최적화에 활용될 전망
- LBS
 - . GPS기술 등과 연계하여 u-City내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어린이의 위치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u-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전망
- 스마트 카드
 - .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점차 스마트카드로 진화됨에 따라, u-City내 교통, 통신, 신분확인, 출입통제 등 One-Card 실현 가능 예상
- 공통플랫폼S/W
 - . 다양한 u-서비스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가공하여 S/W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SI기술에 활용될 전망
- u-디바이스
 - . 편재성, 보안성, 편의성이 강화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 등 u-디바이스의 증가에 따라 u-City내 각종 서비스의 이용이 촉진될 전망
- 근거리 무선통신
 - . Bluetooth, Zigbee, UWB 등 다양한 원거리 쌍방향 무선송수신이 가능한 무선통신기기를 활용, u-홈, u-Work, u-헬스케어, u-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 전망
- SoC/MEMS
 - . 데이터 입력 디바이스, 터치스크린 휴대기기 등의 수요 증대로, u-City내 무선센서 네트워크, 가사 지원용 가정용 로봇 등과 결합하여 활용될 전망
- 임베디드 S/W
 - . 지능형 텔레메틱스, 원격의료, 센서기기 솔루션 등으로 영역이 확산되어, u-방범방재, u-보건복지, u-시설 등 u-City의 통합 재난 및 환경관리 전반에 걸

쳐 활용 전망

● GPS

- 차량관제·제어, 실시간 위험상황 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등에 활용됨으로써 u-City내 일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전망

이와 같이 다양한 IT기술들이 개별적 또는 네트워킹화하여 구축, 운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확대는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경우 그 영향이 전 산업으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구축단계로부터 철저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 현상은 각각의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 뿐만아니라 품질의 최종확보를 담보케 하는 감리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 감리제도는 '97년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 운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과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연구범위 및 목표

1. 제도적인 측면

감리는 엔지니어링 기술¹⁾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감리와 관련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9에서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감리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설계와 감리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시공법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공사업법으로 개정된다.

감리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서는 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정보통신과 유사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4.는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엔지니어링 특히, 설계와 감리에 대한 관리법으로 1995년 전기공사업법으로부터 별도 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보듯이 감리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중의 하나로서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감리에 대하여는 근거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이를 근거로 세부 시행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세부적인 시행내용을 살펴 보면 세부 시행내용에 있어서 실시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등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체계 하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감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고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²⁾. 한편 감리업을 구성하는 감리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법을 관리하는 주체도 건설기술관리법이 국토해양부, 전력기술관리법이 지식경제부로 단일화 되어 있는 반면, 정보통신감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통신방송위원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다.

2.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8조는 정보통신감리의 시행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³⁾ 최근 5년간의 정보통신감리발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시공금액

2)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3)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

에 비하여 감리금액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발주기관의 경우 정보통신감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리발주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은 정보통신설비 감리에 대한 체계적이지 않은 제도와 제도의 관리운영의 미흡을 인하여 정보통신감리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여 정보통신감리기술의 발전과 감리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4)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감리실적보고서 참조

본 연구는 감리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감리제도와 운영의 일원화를 도모 하여야 하는 타당성과 그 방안을 제시한다. 즉 시공법위주인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부터 감리관련한 용역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또는 현 공사업법을 개정하는 방법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감리 업체에 대한 관리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제도시행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의 관련사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유관법률에 대하여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정보통신감리 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강방안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적응형 감리원 양성방안, 감리제도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체계 마련과 벌칙등의 강화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제3장 감리법제도 현황 및 분석

1. 개 요

정보통신감리제도는 아래그림과 같이 감리업체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리시행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리를 위한 표준품셈과 감리업무수행지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감리시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양성 및 자격기준, 감리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감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건들인 기술기준과 표준에 대하여는 전기통신법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제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간 상관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리제도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제3조의2)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나. 기술사의 고용확대(제3조의6)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신고하는 기술인력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이상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인력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필수인력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핵심엔지니어링기술 개발지원(제6조)

정부는 다수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술을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이라하고 이를 개발보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마. 엔지니어링대가기준(제10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성과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바.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것이다. 동 표준품셈의 제정경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월,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감리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품셈제정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품셈을 제정키로 결정한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관계기관 검토를 마치고 12월 9일에 확정,공표한다. 2002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관련 규정의 개정⁵⁾에 따라 동 표준품셈의 개정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개정안을 확정, 공표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표준품셈의 주요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서 설

1.1 적용기준

1.2 정보통신설비 감리활동의 정의

1.3 감리업무 범위

1.4 감리원의 배치기준

1.5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1.6 감리수행지침

제 2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기준원칙

2.1 적산기준

2.2 감리비 적산체계

제 3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구성과 내용

3.1 적산체계 기준

3.2 적용 비목의 분류

3.3 기타적용

제 2 장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별 적용기준

제 1 절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 일반사항

1.1 감리대상 업무 구분

1.2 감리 수행기준 및 조직

제 2 절 업무별 적용공량

2.1 통신설비공사

2.2 방송설비공사

2.3 정보설비공사

2.4 기타설비공사

5) 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표준품셈, 표준품셈제10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3.3)

2.4.1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부록1」 표준품셈 감리원배치기준

「별표1」 정보통신부문의 설계감리요율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이 감리시행에 대한 근거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두고 있듯이 정보통신감리대가표준품셈의 제개정은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3.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관련 현황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서 감리와 관련한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5. "용역"

6. "용역업"

7.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 기술사법 제6조)

8. "설계"

9. "감리"

10. "감리원"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7조 (설계 등)

제8조 (감리 등)

제9조 (감리원의 공사시정명령 등)

제10조 (감리원의 시정조치)

제11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제74조 (벌칙) 1. 3.
제75조 (벌칙) 1.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중 감리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동 시행령 58조
항중에서 용역업에 관련된 조항이 15개에 해당된다. 이중 감리에 대한 조항은 12개항
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감리관련 조항은 감리인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조 공사의 범위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3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살펴 볼 경우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법명칭이다. 동법제2조 2,3,4호에서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는 용역과는 다름

을 알 수 있다. 동조 5호⁶⁾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있는 정보통신공사⁷⁾중 시공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조 2,3,4호는 정보통신공사중 시공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한 논리로 제3장 제1절의 공사업의 등록은 시공업의 등록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장은 제2조 7호⁸⁾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법령의 감리제도 중에서 감리원 양성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인력양성과 관련하여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용역업의 모법으로 준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의 2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유사법 현황

4.1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은 1995년 전기공사업법 제26조⁹⁾를 삭제, 개정하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전문화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¹⁰⁾

6)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제26조 (전기공사의 설계) ①공사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7.전력기술관리법제정. 개정이유 참조

즉, 동법은 전기공사의 시공법인 전기공사법에서 용역업인 설계분야를 삭제하고 용역관련 고유법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법령의 내용이 엔지니어링(용역)인 설계와 감리를 중점으로 입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주요 조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등)

제7조 (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제8조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제9조 (전력기술기준)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12조 (공사감리등)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14조의2 (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제16조의2 (설계업감리업의) 제17조 (휴업등의)

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제18조의2 (공제사업)

제27조의2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중에서 감리부분에 대하여 발췌한 것이다.

제2조 정의 (4. 공사감리 5. 감리원)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동법제6조에는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전력기술인단체, 전력기술관련단체 및 전력관련학술단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2조에는 공사감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리원의 배치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3조는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는 감리업의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 하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14조2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은 시공 관리법인 전기공사법에서 용역관련 한개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정되었다.

이것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기술의 관리 및 운용제도에 시사하여 주는 바가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감리원 자격과 인정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력기술관리법은 감리원자격을 부여 받은 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감리원자격을 받기 위하여 인정교육을 받도록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감리업에 있어서도 전력기술관리법은 종합감리와 전문감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준용함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다.

4.2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되었다. 법률의 제정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기반과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인력·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 함.

- 공공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전담할 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설계·시공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중에서 감리와 관련한 조항들을 발췌한 것이다.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에 설계감리, 책임감리 및 감리원 정의¹¹⁾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11)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27조의2 책임감리대가의 기준
제28조 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28조의5 감리원의 겸직 금지
제28조의6 감리원의 중복배치 금지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동법 시행령상의 감리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35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감독 등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통지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제54조의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5.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입법예고안 분석

한나라당 김영선국회의원의외 15인이 정보통신감리에 관련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가칭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으로 다음은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가. 제안이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이어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 환경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기술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공사를 위한 설계와 감리가 건설 및 전기공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통신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공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있어서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
-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8조)
-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안 제10조).
-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종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주한 설계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정보통신공사기술 관련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정보통신공사기술인협회를 설립하여 정보통신설계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그리고 기술사법에서 산발적,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용역에 관하여 체계화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법의 명칭이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으로 한 것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에 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공사의 범위는 시공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법의 명칭과 정보통신공사의 용어정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연구개발 등 진흥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의 범위중 연구외에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자문 등 연구개발 및 진흥하여야 할 기술이 많다. 특히 설계와 감리기술이 매우 고도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작금까지 연구개발과 진흥차원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부분이 본 법안에 담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30,000여명의 감리원을 배출하였다.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현재 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계, 감리의 의무적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무적 시행이라함은 자체 감리의 시행이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자사외의 엔지니어링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감리원의 배출 시작시점이 10여년 전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인력의 양성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 및 지원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미흡하나마 감리원에 대한 육성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해 왔으나 설계나 기타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양성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다. 시공과 감리는 기획, 타당성조사, 특히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분야가 취약할 경우 시공과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정부에서 전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토록 하였던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근거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술자의 활용에 있어서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기술사에 대한 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의 핵심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책에 대한 근거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엔지니어링 주체 활동 현황 분석

1. 엔지니어링주체 활동현황

가. 엔지니어링 활동 영위현황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활동은 1997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제도가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아래 그래프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신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0~2004년도의 엔지니어링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활동실적이 있는 업체의 수는 2000년부터 106개, 98개, 80개, 116개 및 2004년도 163개로 나타났다. 신고제로의 전환후에 업체수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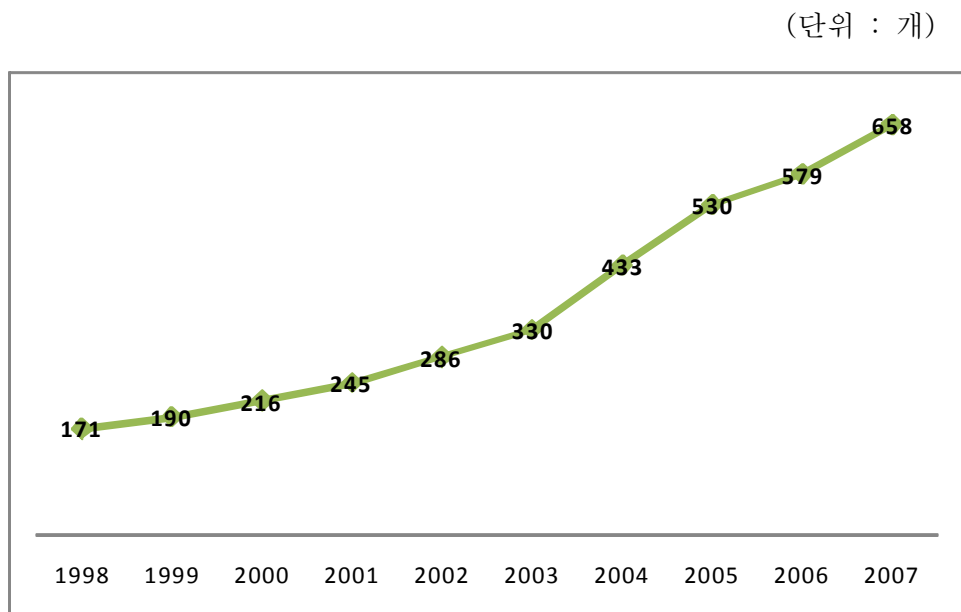


그림5.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및 실질활동업체 현황

나.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과 국내정보통신산업

아래 표1은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의 2000년 이후 5년간의 각 부문별 매출액(생산액)과 GDP총액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전체의 매출액도 보

여 주고 있다.

표1. 국내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GDP 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보통신엔지니어링	280,134	269,799	390,966	277,477	460,368
엔지니어링산업 전체	2,836,263	2,941,684	4,818,505	4,898,205	4,594,312
정보통신산업 전체	156,253,388	158,146,228	199,488,667	212,505,606	240,770,391
GDP 총액	578,664,000	622,122,000	684,263,000	724,675,000	778,446,000

아래 표2는 정보통신산업의 각부문간의 점유율로서 엔지니어링산업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의 경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부문이 전체의 평균 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전체의 규모에서 정보통신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1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GDP에서 정보통신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율은 0.0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 전체의 GDP대 비중은 28% 정도로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정보화시대에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산업이 표에서 말하여 주듯이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 평균1%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GDP대비에서도 0.05%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지탱하는 지식산업 즉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이 지식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지식산업에 있다고 본다면 지식산업을 선도하여야 하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한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정보통신엔지니어링의 현황이 미미한데도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를

예측 할 수 있다.

표2.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점유율 비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엔지니어링산업 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9.9%	9.2%	8.1%	5.7%	10.0%
정보통신산업 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0.18%	0.17%	0.20%	0.13%	0.19%
GDP 대 정보통신엔지니어링	0.048%	0.043%	0.057%	0.038%	0.059%
GDP 대 정보통신산업	27.0%	25.4%	29.2%	29.3%	30.9%

다. 정보통신공사업 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

아래 그림6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년도별 계약건수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무에 대한 년도별 계약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공공단체 및 통신사업자와 기타 민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적용이 대부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되어 지고 있으나 2002년 KT의 민영화에 따라 KT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정보통신관련 법에 의하면 모든 정보통신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제정 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면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출은 총공사비 효율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액가산방식은 그 외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가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무의 계약건수가 전체 정보통신공

사업의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되는 정보통신공사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내의 정보통신기반의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정보통신법제도의 관리에 대한 정책평가 지표도 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여 주는 것에 의하면 앞서 고려되는 점들이 모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년도별 추이를 볼 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계약건수는 증가추세이며 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사와 심지어 정부출연기관에서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용역의 외부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역건수가 예외규정에 속하는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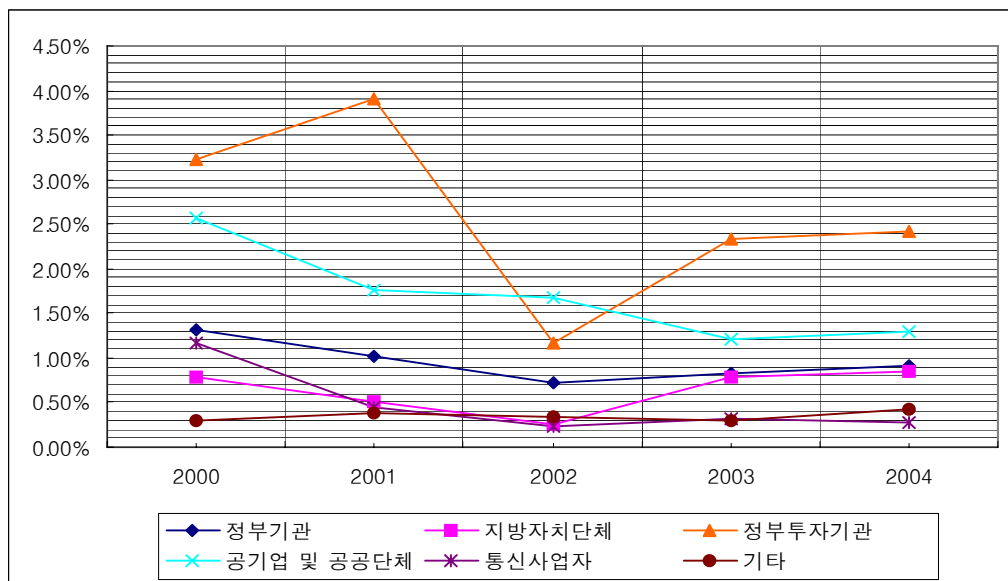


그림6. 정보통신 공사업 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계약건수 비율

다음 아래 그림7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계약금액대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계약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래프도 여섯 개 유형의 기관별 분석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계약건수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의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대형 공사의 실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기관 및 민간부분에서는 그 비율이 상승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답보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앞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특이한 것으로는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온 통신사업자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용역발주를 의무화 해온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규모가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기관 등에 비하여 그 실적이 낮은 것은 법의 운용과 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여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관련법령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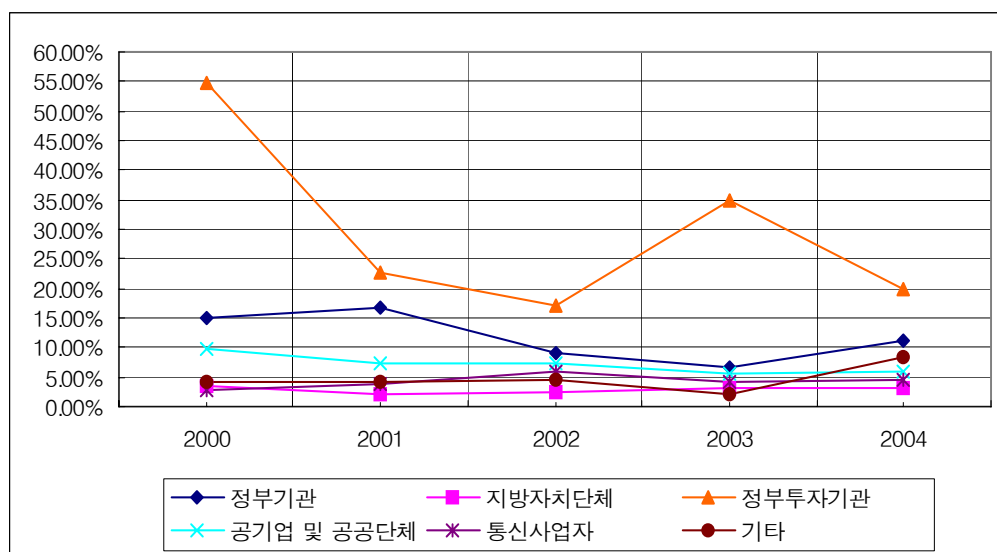


그림7. 정보통신 공사업 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계약금액 비율

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 기술자 현황

아래 그림 8은 연도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자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자 수에 대한 통계 숫자는 엔지니어링업체로 신고하면서 신고 된 기술자 수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업체로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되는 기술자가 엔지니어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기술자와는 다르게 엔지니어링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엔지니어링업체외의 타 직장이나 업무에 이중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관부서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을 하여 놓고 타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즉 겸업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그림대로 라면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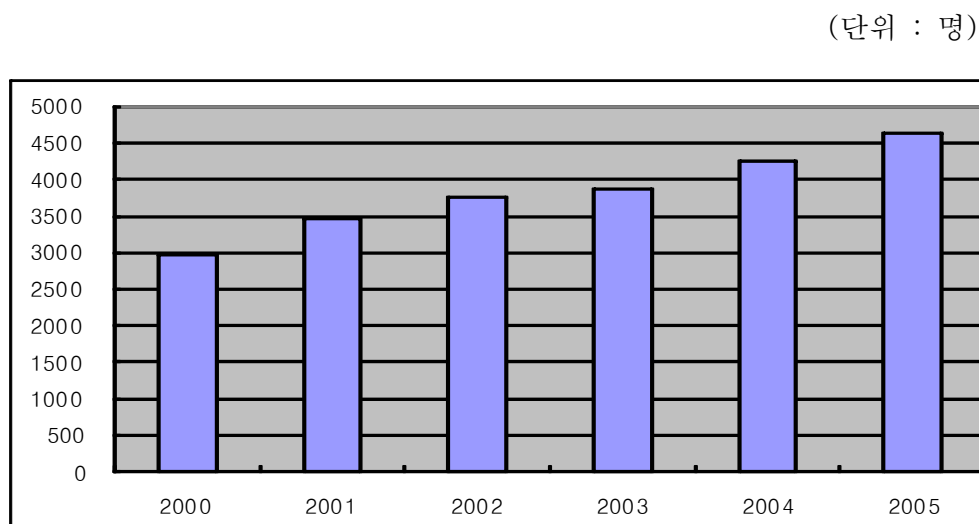


그림8. 정보통신/처리 부문 엔지니어링 기술자 현황

마.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대 기술자 증감현황

다음 그림9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매출액 현황과 기술자에 대한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2002년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의 성장이 거의 없이 현상유지되거나 오히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이렇게 매출은 (-)지수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도는 이와는 반대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술자의 수는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의 경우에는 IMF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문의 투자를 극대화하고 있을 때이고 반대로 IMF를 거쳐 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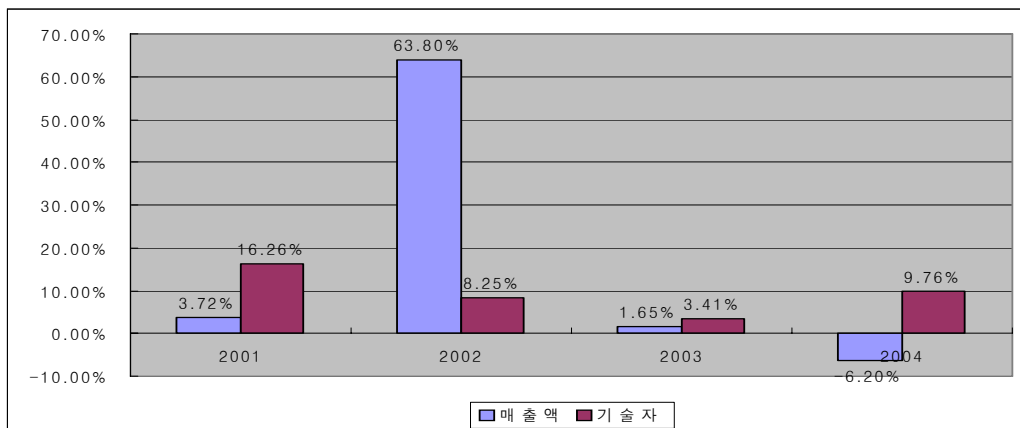


그림9.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및 기술자 증감현황

2. 정보통신감리업체 현황

가. 정보통신감리 연도별 발주 및 수주기관현황

그림 10은 최근 10년간의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연도별 발주기관수와 수주한 건수를 보여 주고 있다. 10년전인 1998년도에 비해 2007년도는 수주건수가 10배정도 증가하였고 발주기관수도 12배정도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도 이후

발주기관수가 증가한 요인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구축물에 대한 감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이후의 발주자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관명이 아닌 개인명의 발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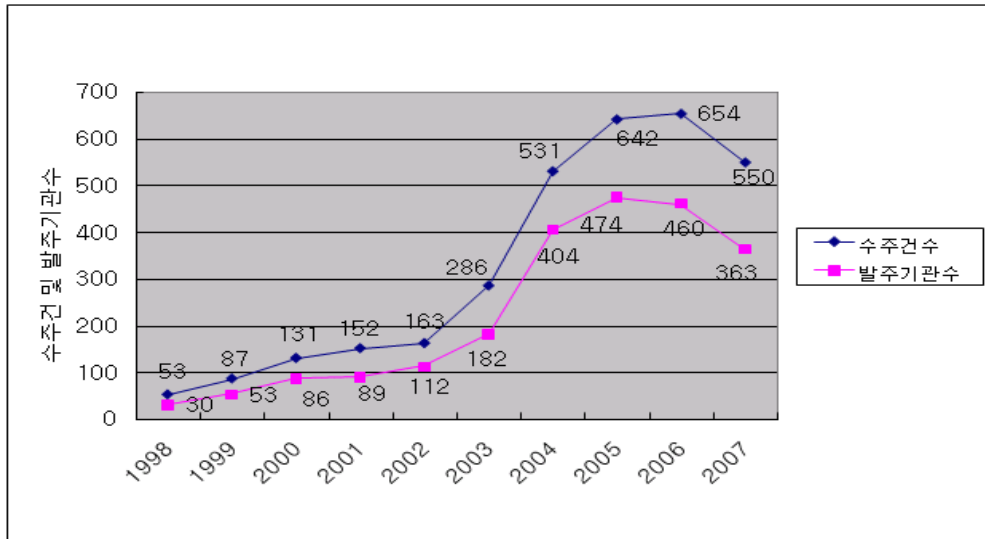


그림 10. 정보통신감리 연도별 발주기관 및 수주건수

그림 11은 연도별 10년간의 감리발주수에 대한 발주자수와 수주자수에 대한 것을 보여 준다. 1998년도의 발주자대 수주자간의 비율은 발주자가 수주자에 비하여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발주자가 수주자에 비하여 4.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수주자가 발주자로부터 4건이상을 수주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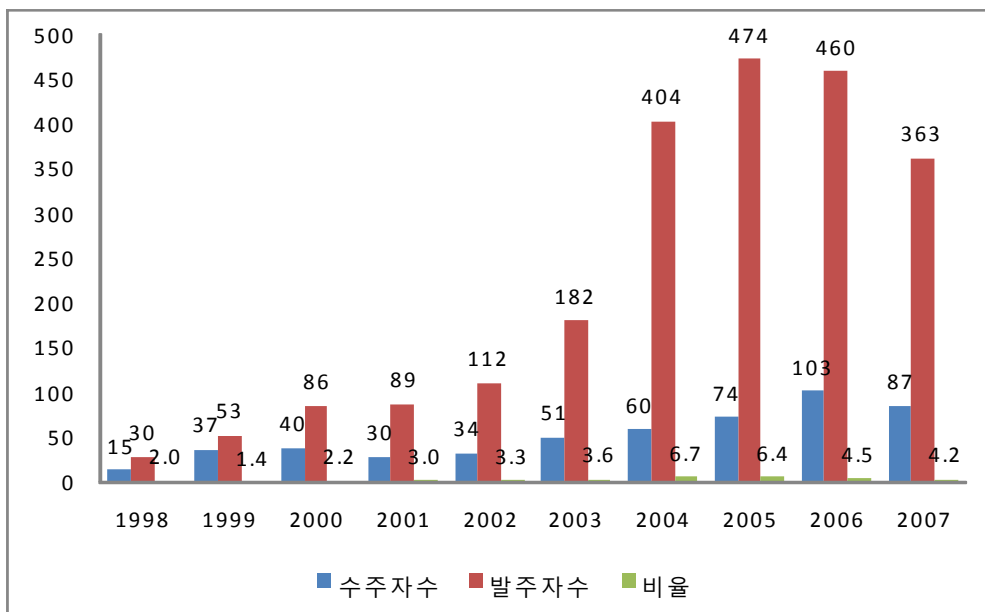


그림 11. 정보통신감리 연도별 발주자 및 수주자수

그림 12에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1998년도에는 수주자가 3.5건을 수주하였고 2004년도에는 8.9건, 2007에는 6.3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 수주자가 하나의 발주자로부터 여러 건의 수주를 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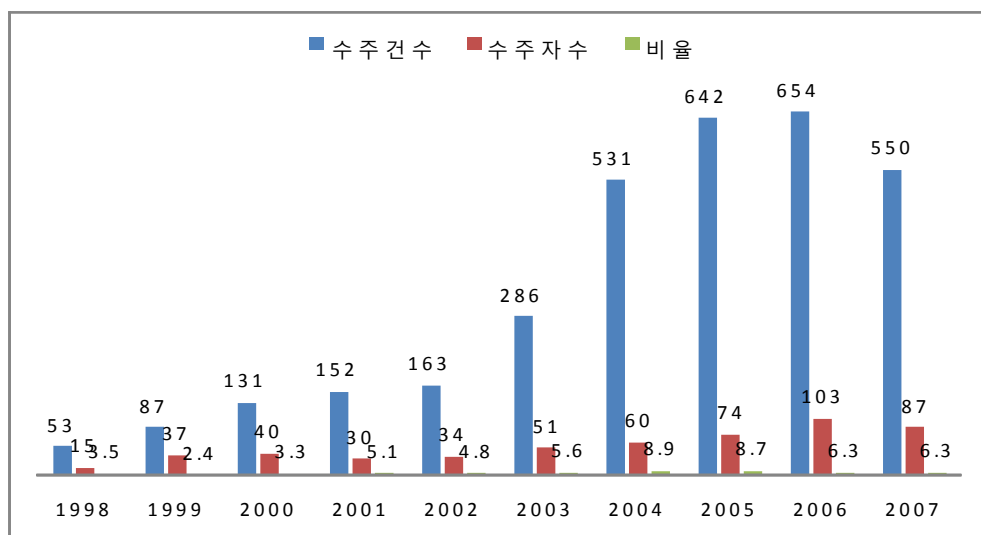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감리 수주자수 대 수주건수

그림 13은 연도별 정보통신(정보처리포함) 수주건수대 수주액(억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수주건당 수주액을 계산하여 보면 2001년도부터 2.9억원, 8.9억원, 6.2억원, 3.2억원, 1.2억원, 2.9억원 및 1.7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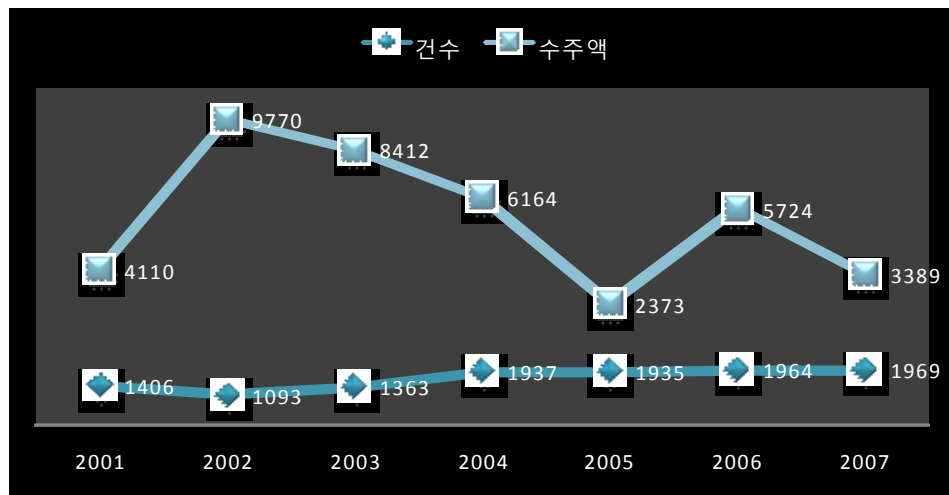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수주건수 및 수주액(억원)

그림 14는 연도별 정보통신 감리 수주 계약금액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8년도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리제도는 감리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약36억원의 수주액이 2007년도에는 263억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통신산업의 확대에 비하면 감리시장의 성장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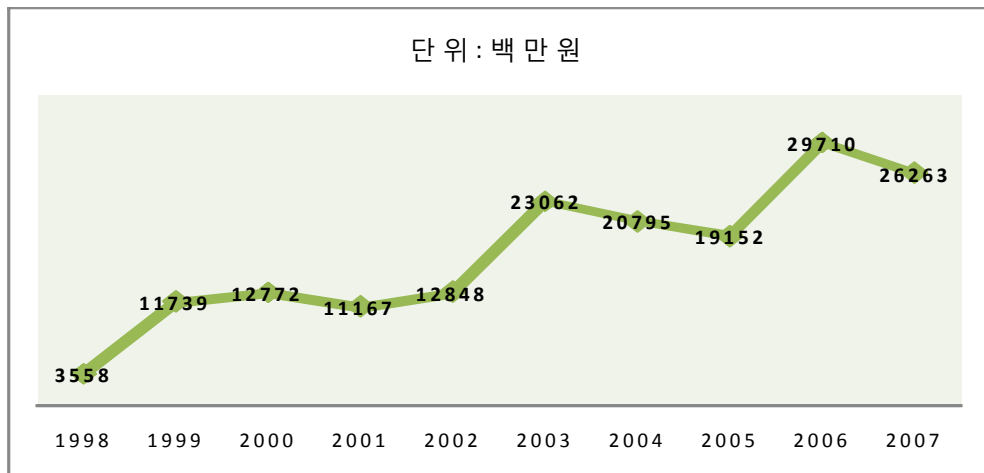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정보통신 감리 수주 계약금액

그림15는 연도별 정보통신감리 수주건당 평균 수주액과 그림13의 엔지니어링 건당 수주금액을 건당감리수주액과 비교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수주액의 대부분은 설계와 감리비용임을 감안할 때 감리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감리건당 수주액이 1998년에는 67백만원이었고 2007년에는 48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당 수주금액이 낮은 것은 수주금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수주건수의 증가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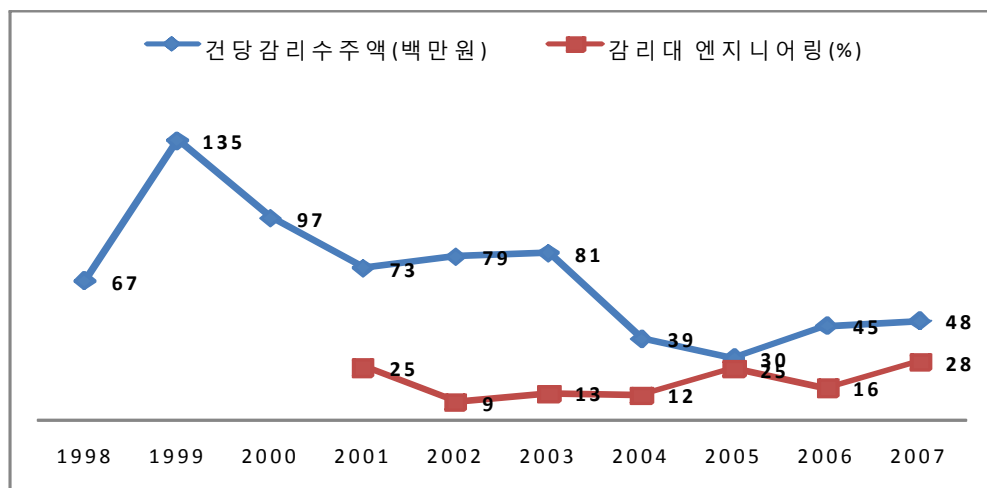


그림15. 연도별 건당감리 수주액 및 감리대 엔지니어링 비율

그림 16은 연도별 정보통신감리 수주액에 대한 최대액과 최저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대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저액은 2007

년 2,000원으로부터 1999년 1,200,000원까지 이다. 최대금액은 1998년 628,000원
 으로부터 2006년 6,160,000,000원까지이다. 연도별로는 최저액이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으며 최고금액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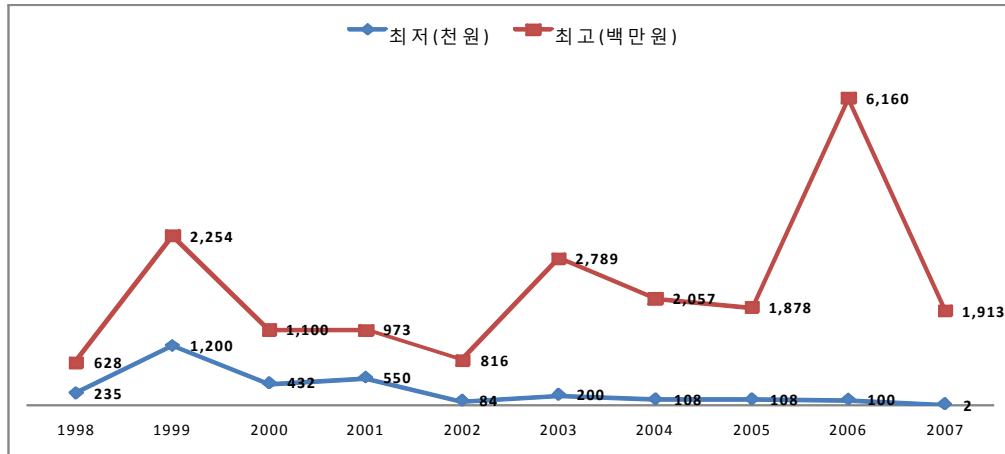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정보통신감리 수주 최대, 최저액

그림 17은 연도별 감리업대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수주액에 대한 비율(%)을 나타
 내는 것이다. 감리업대 공사업간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0.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엔
 지니어링 수주액과에 있어서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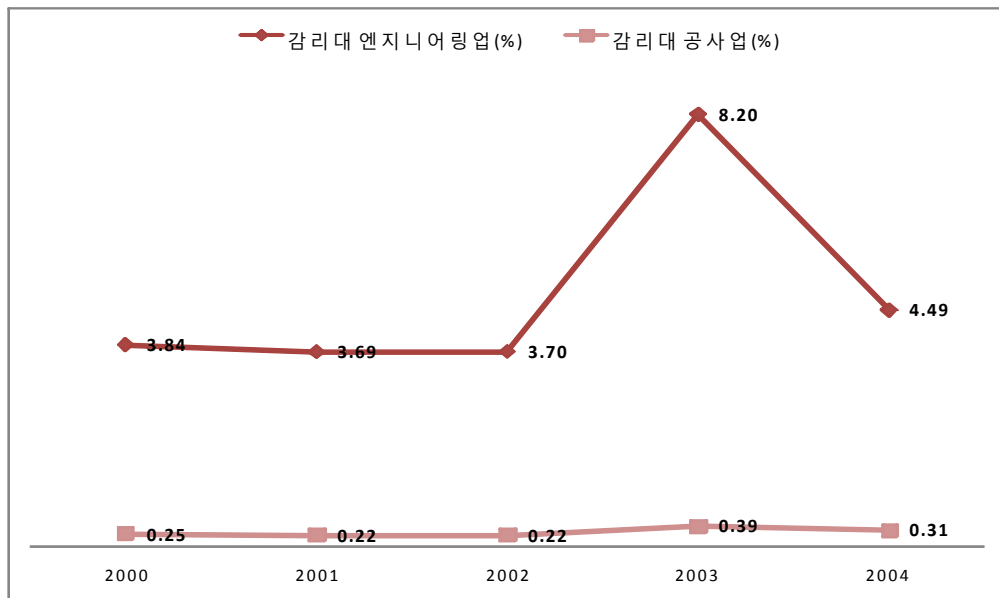


그림 17. 연도별 감리업과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수주액 대비(%)

그림 18은 연도별 감리업과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수주건설을 대비하여 보여 주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감리수주건설은 엔지니어링수주건설의 4.6%이고, 엔지니어링 수주건설은 공사업수주건설의 2%에 미치고 있다. 감리대 공사업 수주건설은 0.1%에 달하지 않는다. 2004년도의 경우 감리 수주건설은 엔지니어링 수주건설의 17%로 2000년에 비해 호전되었다. 2004년도 엔지니어링 수주건설대 공사업 수주건설의 비율은 2%대에 머물고 있어 2000년대 비해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감리대 공사업 수주건설은 0.3%로 2000년도에 비하여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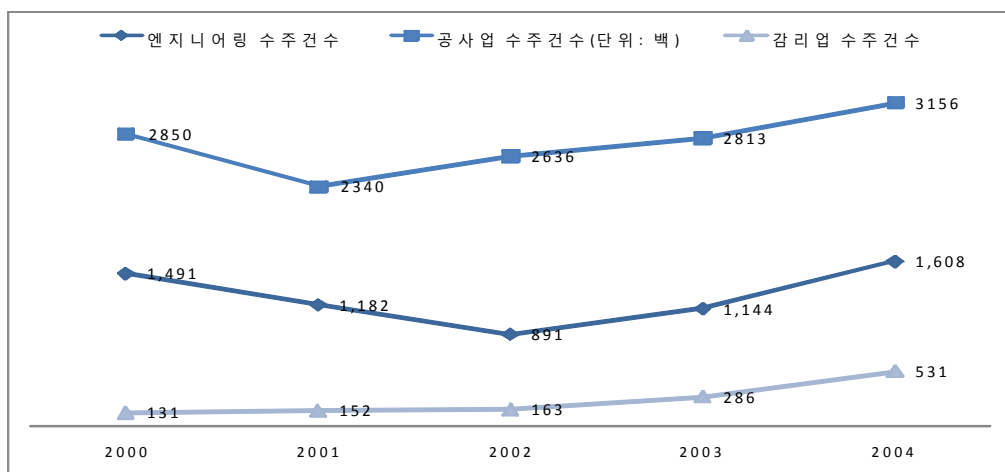


그림 18. 연도별 감리업과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수주건설

그림 19는 1998년이래 현재까지 10년간 감리원을 배출한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총 배출인원이 약33,000여명으로 특급감리원이 15,257명, 고급감리원이 10,062명, 중급감리원이 3,816명이고 초급감리원이 4,011명 배출되었다. 10년간 33,000여명의 감리원을 배출하는데 소요된 교육비가 약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것은 순수한 교육생의 교육비부담액이므로 33,000여명이 감리교육을 받기 위하여 소요한 일자를 고려할 경우 약 100억원이 소요된 것이다. 즉 기술자들이 감리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1년에 10억여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 비용은 2005~2007년간 수주한 감리금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2000년도에 엔지니어링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수가 3,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2007년 현재 5,584명으로 통계되어 있다. 즉 7년간 약 2600여명이 순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연평균 370여명이 엔지니어링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분야에 진출한 2,600여명이 모두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자라 할 경우 배출인원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리수주건수 및 수주금액이 엔지니어링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에 비하여 1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 할 경우 2,600여명중 약 300여명이 감리업에 진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인원은 전체 배출인원의 1%에 그치는 예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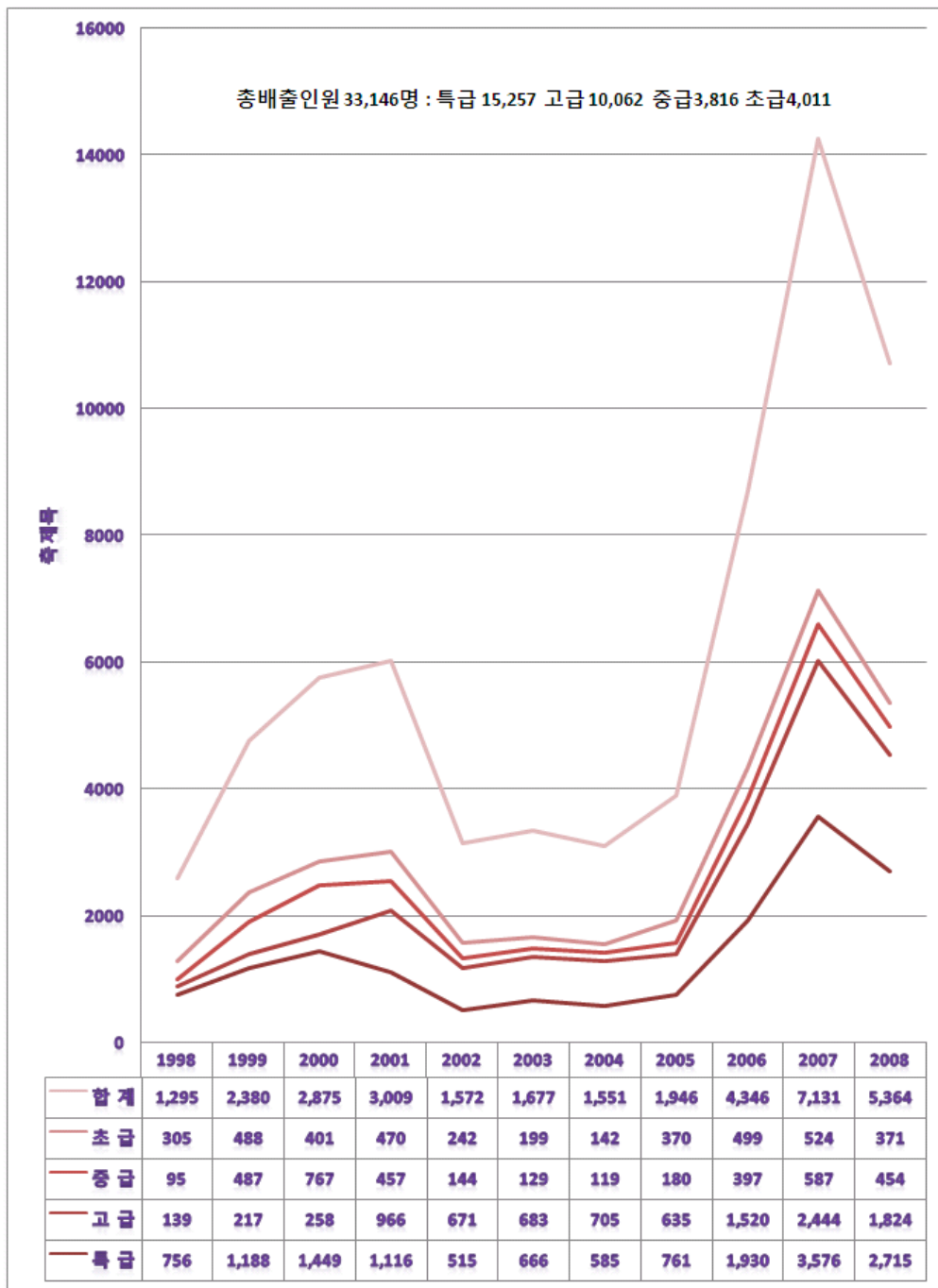


그림 19. 정보통신감리원배출현황

제5장 감리제도 개선방안

1. 개 요

이상에서 정보통신감리와 관련한 법제도의 현황과 운용, 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1998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현시점에서 그 실익에 대하여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석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로, 법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감리원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어 감리기술의 연구개발과 감리시장의 촉진에 의한 감리업의 활성화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원의 양성에 있어서도 그 활용책이 없이 33,000명이라는 엄청난 인력만 양성하여 국가의 사회비용만 축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편 감리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넓은 전기통신사업용 시장은 관리 기관의 방임과 사업자들의 탈법으로 인하여 도외시 되어 오고 있다.

감리원은 공무원의 의제라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감리는 공무원이 행하여야 하는 공적인 업무인 것이다. 법적인 근거없이 공무원이 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해태하거나 공무원이 이를 방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매우 잘 못된 것이다.

정보통신감리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감리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감리기술인을 통하여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감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감리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실한 감리기업의 육성 등을 정부차원에서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의 1단계 작업이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장에서는 정보통신감리기술의 발전과 감리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건실한 감리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정보통신품질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두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의 제도, 즉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이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2. 새로운 법체계 도입방안

가. 개 요

기술용역육성법은 1973년 2월 5일 법률 제2474호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92년 11월 25일, 현재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면개정된다.

전면개정이유로는 개방화·국제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활동 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이때에 기술용역업등록제도를 종전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게 된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기술용역육성법이 시행중이던 1987년 제정된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중인 1995년 제정된다. 특 전력기술관리법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용역에 대한 근거를 폐지하면서 이를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존속시킨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감리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한다.

나. 가칭 “정보통신용역기술관리법”

1) 본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

새로운 법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크게 정보통신용역의 진흥,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 관련단체, 벌칙이다.

본법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총칙부분에서 다룬다. 정보통신용역의 진흥에 대한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기관등의 육성, 연구과제의 선정,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신기술의 지정·보호, 신기술의 지정취소, 정보통신용역기술인력의 관리, 및 정보통신용역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등에 대하여 2장에

서 다룬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대한 규정으로 정보통신기술기준, 기술기준의 준수,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공사감리, 감리자의 배치, 감리자의 공사중 지명령,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설계·감리업자 선정, 설계와 설계감리, 공사와 공사감리의 분리,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 휴업등의 신고, 설계·감리대가 등에 대하여 제3장에서 다룬다.

정보통신용역 관련단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용역협회의 설립, 공제사업, 보고 및 검사, 비밀유지,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 제4장에서 다룬다.

이하 벌칙과 부칙에 대하여 다룬다.

2) 본법안에 담길 세부 내용

a. 본법안의 목적

본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통신용역기술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수준향상과 정보통신시설물설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넷째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b. 용어의 정의

본법안에서 특별히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이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이하 “정보통신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 및 감리와 완공된 정보통신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용역기술”이라 함은 정보통신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보통신용역업"이라 함은 정보통신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용역업자"라 함은 이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설계"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감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설계감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에 있어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시공감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임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설계사"라 함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설계원"라 함은 정보통신설계 능력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감리사"라 함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법안에서는 정보통신관련 타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정보통신용역, 정보통신용역기술, 정보통신설계사, 정보통신설계원 및 정보통신감리사 등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c. 정보통신용역의 진흥

정부는 정보통신용역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용역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둘째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세째 정보통신용역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네째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정보통신용역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그 밖에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용역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용역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새로운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보통신기술인단체, 정보통신기술관련단체, 정보통신관련학술단체 등에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정보통신용역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용역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정보통신용역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용역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용역기술인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또한 정보통신용역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용역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용역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용역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안되는 규정을 둔다.

d.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 등 정보통신용역에 필요한 정보통신용역기술기준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작

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또한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정보통신설계원이 작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설계사 및 정보통신설계원은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며 이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업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감리사 및 정보통신감리원의 인정을 교부받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기준 근거를 둔다.

감리업자의 감리사 배치기준, 감리자의 제시공 또는 시공중지명령 등의 조치 근거를 둔다.

설계업,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근거와 설계·감리 용역대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은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감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둔다.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설계감리 또는 공사와 공사감리는 동일업자가 시행할 수 없도록 근거를 둔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근거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둔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보통신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e. 정보통신용역 관련 단체

정보통신기술인등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단체, 학회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이와 같이 설립된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둔다.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아니되는 근거를 둔다.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근거를 둔다.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 －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설계자의 인정서를 받고자 하는 자
- － 감리자의 인정서를 받고자 하는 자
- － 감리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과 근거를 둔다.

- 정보통신기술인·설계자·감리자의 교육훈련 및 관리
- 설계사 및 설계원 인정서의 발급
- 감리사 및 감리원 인정서의 발급
- 감리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 감리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

벌칙에 대하여는 통신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시공 감리를 발주한 자, 감리자의 재시공,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을 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 감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부칙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용역에 관하여 타법에 다르게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3. 기존 법체계 개선 방안

가. 개 요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기존의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이 해당된다. 본고 제3장에서 기술사법을 제외한 정보통신감리에 관련한 법률 및 법령 등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중심으로 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명칭의 변경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살펴 볼 경우 법의 명칭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법제2조 2,3,4호에서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는 용역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동조 5호¹²⁾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있는 정보통신공사¹³⁾중 시공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조 2,3,4호는 정보통신공사중 시공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한 논리로 제3장 제1절의 공사업의 등록은 시공업의 등록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장은 제2조 7호¹⁴⁾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명칭을 정보통신기술용역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기술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보완

정보통신공사업법중 감리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보강하여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한다.

1) 용어의 순화

법률과 시행령상에서 시공에 해당되는 “공사”의 용어를 시공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조, 제2조 2, 3, 4, 제4조, 제6조, 제7조문내의 공사라는 용어와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3장(공사의 시공)의 각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사라는 용어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3장의 “공사의 시공”이란 제1조 및 제2조의 용어와 맞지 않으므로 “시공”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 감독 등)도 변경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1조의 경우는 본법에 설계와 감리등의 용역업에 대한 등록과 도급이 본법에 추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2조(공사의 범위),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제2장(공사의 설

-
- 12)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감리),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장(공사의 시공) 각조문에서 사용되는 “공사”, 제5장(공사업 관련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사라는 용어는 “시공”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목적의 재정의

본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목적의 재정의가 필요하다¹⁵⁾.

3) 용어의 정의 보완

본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용어정의의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¹⁶⁾.

4) 용역업 육성 규정 보강

제12조의 2(용역업의 육성 등)를 보강하여야 한다.¹⁷⁾ 보강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용역진흥기본계획수립, 연구기관 육성,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에 대한 것이다.

4) 용역업(설계업.감리업)의 등록 근거 추가

용역업에 대한 등록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제2장(공사의 설계.감리)에 설계업과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양도와 휴업신고에 관한 내용이다¹⁸⁾. 다른 한가지 방안은 제3장 제1절(공사업의 등록)을 보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공사업을 시공업으로 변경하고, 본 절에 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할 경우 제3장의 제1절과 제2절을 용역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용역업 등록에 따른 별도의 조항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5)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규정 개정

○ 현행 :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5) 가칭 “정보통신기술용역관리법”초안 참조

16) 위의 내용 참조

17) 위의 내용 “제2장 정보통신용역의 진흥”참조

18) 위의 내용 “제3장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참조

○ 개정안 :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1, 2, 3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 개정필요성 : 제6조 1항 4(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는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는 시공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설계도면으로 하는 것이다. 감리시에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리원이 판단할 경우에, 감리원은 그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감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시공이 기존의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리를 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 현행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안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기간망과 관련이 없는 공사

○ 개정필요성 :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이라 하더라도 기간망과 직접관련이 있는 설비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공의 경우에는 시공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감리를 하여 시공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 현행 :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안 :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필요성 : 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공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전과 재해예방 및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는 공사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철저히 감리를 하므로써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개정안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초고속 2등급이하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개정필요성 : 전기통신역무용과 정보제어 설비에 대한 것은 1호와 2호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하거나 근무하는 곳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개정안 : 5. 그 밖에 공중통신, 인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계고하는 공사

○ 개정필요성 : 인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설비는 감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법령의 감리제도 중에서 감리원 양성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인력양성과 관련하여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용역업의 모법으로 준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의 2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각 도입방안별 장단점 분석

이상에서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법체계도입방안과 기존법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감리관련한 법체계 뿐만아니라 설계 등 용역관련 제도를 시공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공과 감리는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견제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동일법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건설과 전력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력기술과 건설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은 시공법과 함께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준용하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관계기관간의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흐름이 법령의 통합을 주창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 명칭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전면개정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감리제도를 보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6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감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감리대기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품셈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감리시장에 대한 10여년 간의 통계자료에 의해 현 정보통신감리시장의 실태와 감리원 양성 현황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표적인 엔지니어링업체의 대표와 관련협회의 대표자, 서울시,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련 기관 담당자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여 정보통신 감리제도의 개선점과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개선사항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감리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이산되어 있는 감리제도의 통합적 관리방안, 감리원에 대한 양성과 활용, 그리고 정보통신용역의 진흥과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반기에 국회에서 가칭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이 의원입법으로 예고되었다. 동 법안에 본 연구결과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니나 큰 흐름의 틀안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법과 시행령 등의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전자통신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등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첨언한다.

부 록1

정보통신용역기술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정보통신용역의 진흥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제6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등)

제6조의3 (신기술의 지정취소)

제7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인력의 관리등)

제8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제3장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

제9조 (정보통신기술기준)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12조 (공사감리등)

제12조의2 (감리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제14조의2 (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15조 (설계와 설계감리, 공사와 공사감리의 분리)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2 (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제4장 정보통신용역 관련단체

제18조 (정보통신용역협회의 설립)

제18조의2 (공제사업)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0조 (비밀유지)

제21조 (청문)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5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4조의2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기술"이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이하 "정보통신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 및 감리와 완공된 정보통신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기술"이라 함은 정보통신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정보통신용역업"이라 함은 정보통신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통신용역업자"라 함은 이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정보통신설계"라 함은 정보통신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보통신감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통신설계감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에 있어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보통신시공감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임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설계사"라 함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등 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2. "정보통신설계원"이라 함은 정보통신설계사외의 자로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능력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정보통신감리사"라 함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4. "정보통신감리원"이라 함은 정보통신감리사외의 자로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감리 능력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용역의 진흥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용역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용역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용역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용역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용역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용역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보통신용역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정보통신기술인단체
3. 정보통신기술관련단체
4. 정보통신관련학술단체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정보통신용역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용역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정보통신용역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정보통신용역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신기술의 지정취소)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정보통신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인력의 관리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용역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용역기술인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②정부는 정보통신용역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용역기술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보통신용역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정보통신용역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용역기술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는 정보통신용역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

제9조 (정보통신기술기준) ①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 등 정보통신용역에 필요한 정보통신용역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 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감리사 및 정보통신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

록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정보통신설계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설계사 및 정보통신설계원은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정보통신설계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계사 및 정보통신설계원의 인정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그 인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원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및 설계원의 인정서 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설계 및 시공감리등) ①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각종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정보

통신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감리사 및 정보통신감리원의 인정서를 교부 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사 또는 감리원의 인정서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자의 인정서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행하는 감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통신시설물의 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는 감리자의 자격에 관한 인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령으로 정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감리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자를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자배치확인서 또는 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배치현황신고서·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배치확인서 및 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자는 시공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자가 시공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감리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리업의 등록등) ①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감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령으로 정한다.

⑤감리의 용역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5조 (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정보통신시설물의 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6. 전기통신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위원회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감리업자가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설계와 설계감리, 시공과 시공감리의 분리)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설계감리 또는 시공과 시공감리는 동일업자가 시행할 수 없으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때
3.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때

제17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8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시공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보통신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9조 (감리업의 양도 등) ①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휴업등의 신고)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용역 관련단체

제21조 (정보통신용역협회의 설립) ①정보통신기술인등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인의 품위 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감리협회, 정보통신기술인협회, 정보통신기술사협회, 정보통신용역학회(이하 "단체"라 한다) 등 정보통신용역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령으로 정한다.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 (공제사업) ①단체는 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감리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

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 이 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인정서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의 인정서를 받고자 하는 자
-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 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권한의 위임 등)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설계자·감리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및 설계원 인정서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사 및 감리원 인정서의 발급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 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 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정보통신기술인, 설계자, 감리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 ③ 본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감리와 시공 감리를 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2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 감리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재시공, 시공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감리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및 그 상대방
6.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자 및 그 상대방
7.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8.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제29조의2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의3·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5, 6, 7, 8, 9, 10호는 삭제한다.

제2장은 삭제한다.

제64조와 제64조의 2는 삭제한다.

제73조 1, 제75조 1와 제76조 1, 2, 3호는 삭제한다.

제78조 1, 1의2. 및 2.는 삭제한다.

제3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제39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감리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신기술로 고시한 정보통신용역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 (타법과의 관계) 정보통신설비의 용역에 관하여 타법에 다르게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부록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録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通信技術水準을 向上시키고 情報通信施設物設置의 適正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確保하고 情報通信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5>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情報通信設備"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기타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文字·音響 또는 映像 등의 情報를 貯藏·制御·처리하거나 送·受信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2. "情報通信工事"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置 및 유지·補修에 관한 工事와 이에 따르는 附帶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이라 함은 都給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情報通信工事(이하 "工事"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情報通信工事業者"라 함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이하 "工事業"이라 한다)의 登録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情報通信施工"이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施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情報通信施工技术"이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施工을 수행하는 技術을 말한다.
7. "情報通信施工業"이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施工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情報通信施工業者"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工事業者로 登録하고 情報通信施工業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情報通信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를 받아 情報通信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에 관한 研究·企劃·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監理·試運轉·評價·諮問·指導, 維持管理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情報通信用役技術"이라 함은 情報通信用役을 수행하는 技術을 말한다.
11. "情報通信用役業"이라 함은 情報通信用役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2. "情報通信用役業者"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工事業者로 登録하고 情報通信用役業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情報通信설계 분야의 資格을 보유하고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에 의해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하거나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者자로서 설계업을 영위하는 者는 제외한다.
- 5. "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를 받아 工事に 관한 調査·設計·監理·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8. "用役業"이라 함은 用役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7. "用役業者"라 함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하거나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者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 등록하여 로 登錄한 者로서 通信·電子·情報處理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通信관련 분야의 資格을 保有하고 用役業을 營위하는 者를 말한다.~~
13. "設計"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第4조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施工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14. "情報通信設計士 및 設計員"이라 함은 情報通信技術 關聯 分野의 國家技術資格을 取得한자로서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의 認定을 받은 자를 말한다.
15. "監理"라 함은 설계, 시공 등 工事(建築士法 第4조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發注者の 委託을 받은 用役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 여부의 監督 및 品質管理·施工管理 및 安全管理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發注者の 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한다.
16. "情報通信設計監理"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計에 있어 設計圖서가 技術基準에 의거 適法하게 設計되는지를 確認하는 行爲를 말한다.
17. "情報通信施工監理"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置 및 補修工事に 대하여 發注者の 委託을 받은 監理業者가 關聯法規, 設計圖書 및 其他 相關書類의 內容대로 施工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고 品質管理, 施工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發注者の 委任에 따라 發注者の 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한다.
- ~~10. "監理員"이라 함은 설계, 시공등 工事(建築士法 第4조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監理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第8조의 規定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人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8. "情報通信監理士 및 監理員"이라 함은 情報通信技術 關聯 分野의 國家技術資格을 取得한자로서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의 認定을 받은 자를 말한다.
19. "發注者"라 함은 工事(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工事業者(用役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工事を 下都給하는 者는 제외한다.
20. "都給"이라 함은 原都給·下都給·委託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工事を 完結할 것을 約定하고, 發注者가 그 일의 結果에 대하여 對價를 지급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21. "下都給"이라 함은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에 대하여 受給人이 第3者와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22. "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工事を 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23. "下受給人"이라 함은 受給人으로부터 工事を 下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24. "情報通信技術者"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情報通信관련 분야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者와 情報通信設備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第39조의 規定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人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第3條 (工事의 제한) 工事は 情報通信工事業者(이하 "工事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都給을 받

거나 施工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許可를 받은 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役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施工하는 경우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工事を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3. 通信溝設備工事 또는 道路工事に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施工되는 情報通信 地下管路의 設備工事を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第4條 (工事業者의 誠實義務) 工事業者는 情報通信設備의 品質과 安全이 확보되도록 工事 및 用役에 관한 法令을 준수하고 設計圖書 등에 따라 성실히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5條 (外國工事業者에 대한 措置) 放送통신위원회는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工事業의 登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工事業에 관한 外國에서의 資格·學歷·經歷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第2章 工事의 設計·監理

第6條 (技術基準의 준수) ①工事を 設計하는 者는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監理員 情報通信監理士 및 監理員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에 적합하도록 工事を 監理하여야 한다.

第7條 (設計 등) ①發注者는 用役情報通信用役業者(이하 設計業者라 한다.)에게 工事 施工의 設計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者는 그 設計圖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對象인 工事 施工의 범위, 設計圖書의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監理 등) ①發注者는 用役情報通信用役業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工事 施工의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 施工의 監理를 發注받은 用役情報通信用役業者는 監理員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에게 당해 工事に 대한 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放送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大統領령이 정하는 감독원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감독원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감독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당해 감독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監理員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6>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工事 施工의 범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감리원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의 업무범위·배치기준 그 밖에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第9條 (監理員情報通信監理士의 工事 施工中止命令 등) ①監理員-情報通信監理士는 工事 施工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工事 情報通信設備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發注者의 동의를 얻어 再施工 또는 工事-施工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 情報通信監理士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 施工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指示를 받은 工事 施工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0條 (監理員-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에 대한 是正措置) 發注者는 監理員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이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工事가 施工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監理員 당해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에 대하여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1條 (監理結果의 통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 施工의 監理를 發注받은 用役 監理業者는 工事に 대한 監理를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監理結果를 發注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12條 (工事施工業者의 監理制限) 工事施工業者와 用役-監理業者가 同一人이거나 다음 各號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工事施工에 관하여 工事施工과 監理를 함께 할 수 없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母會社와 子會社의 관계에 있는 때
2. 法人과 그 法人의 任·職員의 관계에 있는 때
3.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때

第12條의2 (설계 및 감리業의 육성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用役 설계 및 감리業(이하 용역업이라 한다)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工事의 特性에 적합한 用役業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用役業 등의 現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第3章 工事의 施工

第1節 工事業의 登錄 등

第13條 삭제 <1999.2.5>

第14條 (工事業의 登錄 등)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業, 用役業 (監理業 등) 등 業域 分野別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때에는 登錄證 및 登錄手帖을 교부한다. <개정 1999.2.5, 2004.1.29>

第15條 (登錄의 기준) 工事業의 登錄基準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1. 技術能力
2. 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產評價額)
3. 기타 필요한 사항

第16條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2001.1.16>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제2편제1장·제2장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7條 (工事業의 讓渡 등) ①工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1. 工事業을 讓渡(工事業者인 법인이 分割 또는 分割合併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工事業을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2. 工事業者인 法人간에 合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工事業者인 法人과 工事業者가 아닌 法人이 合併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讓渡의 申告가 있을 때에는 工事業을 讓受한 者는 工事業

을 讓渡한 者의 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하며, 法人의 合併申告가 있는 때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하는 法人이 合併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 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1999.2.5>

③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9.2.5>

第18條 삭제 <1999.2.5>

第19條 (工事業讓渡의 내용 등) ①工事業을 讓渡하고자 하는 者는 工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權利·義務를 모두 讓渡하여야 한다.

1. 施工중인 工事의 都給에 관한 權利·義務

2. 완성된 工事로서 그에 관한 瑕疵擔保責任期間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瑕疵補修에 관한 權利·義務

②第1項의 경우 施工중인 工事が 있는 때에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工事의 都給을 解止한 후가 아니면 工事業을 讓渡할 수 없다.

第20條 삭제 <1999.2.5>

第21條 (工事業의 相續) ①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이 法에 의한 工事業者의 모든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삭제 <1999.2.5>

第22條 (登録이 取消된 工事業者 등의 繼續工事<개정 1999.2.5>) ①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録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都給을 체결하였거나 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 등을 받아 착공한 工事に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施工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録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工事業者가 工事業의 登録이 取消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を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事を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工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5>

④發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工事業者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한하여 都給을 解止할 수 있다.

第23條 (工事業者의 申告義務) ①工事業者는 商號 또는 명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시·도지사에게 工事業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工事業者가 破産한 때에는 그 破産管財人

2. 法人이 合併 또는 破産외의 사유로 解散한 때에는 그 清算人

3. 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工事業을 相續하지 아니하는 그 相續人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사유로 工事業을 廢業한 때에는 그 工事業者이었던 개인 또는 法人의 代表者

第24條 (工事業登錄證 등의 貸與禁止<개정 1999.2.5>) 工事業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工事を 受給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登錄手帖을 貸與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第24條의2 (工事業의 育成施策의 수립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育成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工事業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事を 발주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中小 工事業者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③방송통신위원회는 감리業 등 용역업(이하 용역업이라한다)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工事의 特性에 적합한 用役業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用役業 등의 現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第2節 都給 및 下都給

第25條 (都給의 分離) 工事は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建設工事,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 또는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 등 다른 工事와 分離하여 都給하여야 한다. 다만, 工事의 性質上 또는 技術管理上 分離하여 都給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 (工事都給의 원칙 등) ①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合意에 따라 公정하게 契約을 체결하고, 信義에 따라 성실히 契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그 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都給金額·工事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契約書を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下都給工事의 施工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下受給人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下都給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의 해당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 (工事業에 관한 情報管理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工事に 필요한 資材·人力의 需給

狀況 등 工事業에 관한 情報과 工事業者の 工事 種類別實績, 資本金 및 技術力 등에 관한 情報를 綜合管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工事業者の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工事業者の 工事實績·資本金·技術力 및 工事品質의 信賴도와 品質管理水準 등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施王能力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工事業者は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實績·資本金 기타 大統領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發注者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管理하고 있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情報의 내용과 제공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第28條 삭제 <1999.2.5>

第29條 (工事의 都給) 發注者는 工事を 工事業者에게 都給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1999.2.5]

第30條 (受給資格의 추가제한금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事業者에 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受給資格에 관한 登錄을 하게 하거나 受給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大統領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3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한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第32條 (下受給人の 변경 요구) ①發注者は 下受給人が 그 工事を 施工함에 있어 關係法令에

위반하여 施工하거나 設計圖書대로 施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受給人에 대하여 下受給人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受給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工事結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發注者は 工事に 관한 都給을 解止할 수 있다.

第3節 工事의 施工管理 및 使用前檢査

第33條 (情報通信技術者の 배치) ①工事業者는 工事의 施工管理 기타 技術上の 관리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의 施工현장에 情報通信技術者 1人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施工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가 業務遂行의 能力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受給人에게 情報通信技術者の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受給人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4條 삭제 <1999.2.5>

第35條 (工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 ①工事業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 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工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가 發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發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受給人은 下受給人이 故意 또는 過失로 下都給받은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 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下受給인과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④受給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한 때에는 賠償할 責任이 있는 下受給인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條 (工事의 사용전檢査 등 <개정 2005.12.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節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第37條 (工事의 瑕疵擔保責任) ①受給人은 發注者에 대하여 工事 施工의 완공일부터 5年 이내의 범위에서 工事 施工의 종류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 擔保責任이 있다.

②受給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擔保責任이 없다. 다만, 受給人이 그 재료 또는 指示의 부적당함을 알고 發注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發注者が 제공한 재료의 品質이나 規格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發注者の 指示에 따라 施工한 경우

③工事に 관한 瑕疵擔保責任에 관하여 다른 法律(民法 第670條 및 第671條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한 바에 따른다.

第4章 情報通信技術者

第38條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教育등<개정 1999.2.5>)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情報通信技術者등 情報通信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과 認定教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情報通信技術人力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機關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0, 2008.2.29>

③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教育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9]

第40條 (情報通信技術者の 겸직 등의 금지) ①情報通信技術者は 동시에 2 이상의 工事業體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情報通信技術者は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用役 또는 工事を 수행하게 하거나 經歷手帖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工事關聯團體

第41條 (情報通信工事協會의 設立) ①工事業者は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工事施工 방법의 개량 기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 情報通信工事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設立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 (會員의 資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は 協會에 加入

할 수 있다.<개정 1999.2.5>

第43條 (建議)協會는 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工事業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建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第44條 (民法規定의 準用)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情報通信共濟組合의 設立) ①工事業者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工事業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資金融資 등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 情報通信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의 設立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 (組合의 사업)組合의 사업은 定款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47條 (代理人의 선임)組合은 任員 또는 직원중에서 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第48條 (持分の 讓渡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は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は 그 持분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の 讓渡 및 質權設定(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方法에 의한다.

④민사집행절차나 國稅의 滯納處分節次 등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の 假押留 또는 押留는 民事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券의 假押留 또는 押留 方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第49條 (組合의 持分取得 등)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の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1. 出資金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가지는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組合員이 자기 出資額을 回收하기 위하여 組合에 지분의 讓受를 요구한 때

4. 組合員이 탈퇴한 후 2年이 경과한 때

5. 準備金 出資轉入시 端座가 발생한 때

②組合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資金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同項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

다.

③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취득한 경우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持分取得에 따라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가 가지는 清算金 請求權은 그 持分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소멸한다.

第50條 (組合의 責任) ①組合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法令 기타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金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保證金을 保證債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權者가 組合에 대하여 가지는 保證金에 관한 權利는 保證期間 만료일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소멸한다.

第51條 (다른 法律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 및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6章 삭제 <1999.2.5>

第52條 삭제 <1999.2.5>

第53條 삭제 <1999.2.5>

第54條 삭제 <1999.2.5>

第55條 삭제 <1999.2.5>

第56條 삭제 <1999.2.5>

第57條 삭제 <1999.2.5>

第58條 삭제 <1999.2.5>

第59條 삭제 <1999.2.5>

第60條 삭제 <1999.2.5>

第61條 삭제 <1999.2.5>

第62條 삭제 <1999.2.5>

第7章 監督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64조 (정보통신감리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감리사 및 감리원이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64조의2 (정보통신감리사 및 감리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감리사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감리사 또는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본조신설 2004.1.29]

第65條 (是正命令 등) 시·도지사는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を 한 때
2. 삭제 <1999.2.5>
3.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下都給을 한 때
- 3의2. 제3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の 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電氣通信基本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王함으로써 工事を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都給받은 工事を 이행하지 아니한 때

第66條 (營業의 停止 및 登録의 取消<개정 1999.2.5>) 시·도지사는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停止를 명하거나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2호의2·第4號·第6號 또는 第1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9, 2008.2.29>

1. 삭제 <1999.2.5>
2.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 2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工事業者가 第16條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第16條第7號에 해당하는 法人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이 相續을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당해 工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때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하거나 他人의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때
-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7. 第31條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한 때
8.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를 工事現場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9. 삭제 <2004.1.29>
10.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에 위반한 때
11. 電氣通信基本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工事を 施工한 때
12. 삭제 <1999.2.5>
13. 營業停止處分에 위반하거나 최근 5年間 3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14.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營業停止, 登錄取消의 요구가 있는 때
1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67條 (利害關係인에 의한 制裁의 요구) 工事業者에게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申告하고, 工事業者에 대하여 상당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

[본조신설 2001.1.16]

[제6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8조의3으로 이동 <2004.1.29>]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본조신설 2004.1.29]

[종전 제68조의2는 제68조로 이동 <2004.1.29>]

제68조의3 (청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4.1.29]

[제68조에서 이동 <2004.1.29>]

第8章 補則

第69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한 業務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 施工能力評價 및 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業務

4. 삭제 <1999.2.5>

5.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の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經歷手帖의 발급·관리에 관한 業務

6.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認定教育訓練에 관한 業務를 協會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 지정·告示하는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8.2.29>

第70條 (職務上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職務上 알게된 用役業者 및 工事業者의 財産 및 業務狀況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9.2.5>

1. 이 법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告 또는 監督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
2. 삭제 <1999.2.5>
3. 第6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

第71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6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에 종사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1999.2.5>

제71조의2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72條 (登錄등의 公告<개정 1999.2.5>) 시·도지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9>

1. 工事業의 登錄을 한 때
2. 工事業의 讓渡 및 法人合併의 申告를 받은 때
3. 工事業의 相續으로 代表者가 변경된 때
4. 工事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處分을 한 때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第73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9, 2008.2.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
3. 제1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 및 登錄手帖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4.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能力의 評價를 받고자 하는 者와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者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使用前檢査를 申請하는 者
6. 삭제 <2004.1.29>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8. 삭제 <1999.2.5>

第9章 罰則

第7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5>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와 監理를 함께한 者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를 하고 工事業을 영위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한 者 또는 他人의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者
5.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第7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16, 2004.1.29, 2005.12.30>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通信監理士 또는 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監理를 하게 한 者
 - 1의2.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姓名을 사용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下都給을 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거나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4.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검직을 한 者
5.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歷手帖을 貸與한 者 또는 他人의 經歷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者

第7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9>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한 者
2.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發注한 者
3.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發注한 者
4.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分離하여 都給하지 아니한 者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를 工事現場에 배치하지 아니한 者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第7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者
-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사, 정보통신설계원, 정보통신감리사 또는 정보통신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結果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삭제 <1999.2.5>
4. 삭제 <2004.1.29>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6. 제27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實績·資本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7.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工事의 현장을 이탈한 者
8. 삭제 <1999.2.5>
9. 삭제 <1999.2.5>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11. 제6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1. 제2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4.1.29>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4.1.29>

附則 <제5386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1項, 第36條 및 第42條의 規定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존 工事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工事業 1等級 및 一般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 1等級 및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證 및 許可手帖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別種工事業을 登録한 者는 그 登録의 有效期間까

지는 이 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施行日 현재 그 登録의 有效期間이 1年 이내에 있는 者는 그 登録의 有效期間에 불구하고 이 법 施行日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別種工事業者는 그 登録의 有效期間 또는 이 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이 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基準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條 (工事業許可의 缺格事由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許可의 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工事業讓渡등의 認可申請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讓渡등의 認可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第1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명칭변경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電氣通信工事協會, 電氣通信共濟組合은 이를 각각 情報通信工事協會, 情報通信共濟組合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電氣通信工事協會, 電氣通信共濟組合이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電氣通信工事協會, 電氣通信共濟組合은 이를 각각 情報通信工事協會, 情報通信共濟組合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上 電氣通信工事協會, 電氣通信共濟組合의 名義는 이를 각각 情報通信工事協會, 情報通信共濟組合의 名義로 본다.

第6條 (電氣通信工事業紛爭調停委員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電氣通信工事業紛爭調停委員會는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情報通信工事業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者"를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로 한다.

②建設産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나目を 다음과 같이 한다.

나.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第2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④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電氣通信工事に 관하여는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に 관하여는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⑤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第3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34條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工事業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791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존 工事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 工事業 1等級 및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法律 第5386號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別種工事業者는 그 登錄의 有效期間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別種工事業者의 工事의 受給範圍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工事業 許可申請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許可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 1等級 및 情報通信工事業 2等級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工事業讓渡 등의 認可申請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讓渡 등의 認可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民事訴訟節次"를 "민사집행절차"로,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4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情報化促進基金"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7817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情報通信部令"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참고 문헌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 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하위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정보통신감리원 양성 현황,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감리사업 10년간 현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감리업체 신고현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 현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의원입법 발의 입법예고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